



대부업 회사의 고객명단 부정취득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4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정21년(와) 제4767호
판결 일자	2009. 10. 30.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주식회사 프록스		
피고	1. 니혼바시론서비스 주식회사, 2.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8호, 4조, 민법 719조		
영업 비밀	고객 명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02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모두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8년 크레디아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를 흡수분할계약에 의해 승계했다.

퍼스트크레딧에 재직하던 피고들은 2003년 9월, 퇴직 후 크레디아의 부동산대출부 창설과 함께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007년 2월에는 크레디아를 퇴직하였고 메릴린치일본증권주식회사를 거쳐 4월부터는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또는 직원으로 취직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회사의 고객들은 2007년 6월 이후, 피고 회사 또는 관계 회사로부터 채용자를 받아 크레디아에 기한전 상환을 했다.

이에 원고 회사는 고객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차입을 하고 크레디아에 변제한 시기가 피고 A가 퇴사한 직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 피고 회사가 크레디아의 고객 정보 명단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고객명단은 크레디아의 고객정보가 기록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사용하였다.

고객들이 피고들이 크레디아를 퇴직한 후 피고회사에서 채용자를 한 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볼 때 부정경쟁을 위해 사용했다.

크레디아는 고객으로부터 기한 전 완제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약정이자 수입을 잃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

크레디아는 인맥에 의존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이 고객명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에 영업비밀의 유용성은 없다.

고객들이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은 명단을 활용한 권유 때문이 아니며, 이를 증명할 자세한 경위가 있다.

기한 전 상황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재운용을 한다면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없을 것이다.

04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비밀 중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개했는지 또한 특정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정경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어떠한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 어떤 사용을 했다”는 추인을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경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의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피고들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고객들이 당시 경영불안을 안고 있던 크레디아에서 계속해서 대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대출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것이 각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7호 부정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며, 7호 부정경쟁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8호 부정경쟁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05 Key Point

취득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